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나132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20. 10. 23.

판결 선고 2020. 11. 20.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소15718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57,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57,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3.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를 타인이 개설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 원고의 재산이 합법적인 것임을 증명하려면 불러 주는 안심계좌로 입금하라. 이를 인증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이에 속은 원고는 같은 날 원고의 C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8. 4.경 생활정보지인 'F'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 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G, H)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물건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배달하고 일당 7만 원을 받는 물건 배송업무를 하던 중, 2018. 4. 13. 성명불상의 보이 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G)이 피고에게 '거래처 사장이 돈을 입금하기로 했으니 이를 계좌로 대신 받아 현금으로 출금해서 택배를 전달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여 D은행에서 원고가 입금한 위 6,000,000원을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계좌는 이미 아래 다.항과 같이 지급정지가 되어 있어 출금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가 위 금원을 이체한 직후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이 사건 계좌는 지급이 정지되었고,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어 2018. 7. 25.피해구제금으로 원고에게 1,142,116원이 지급되는 등, 이 사건 계좌에 있던 예금 전액이 보이 스피싱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에 비례하여 피해구제금으로 지급되었다.

라. 원고는 2018. 4. 16. 경기의정부경찰서에 성명불상자 및 피고 등에 대해 위 피해내용을 신고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8. 8. 22. 피고의 위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6,000,000원을 입금하여 피고가 D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서 위 6,000,000원 중 원고가 피해구제금으로 지급받은 1,142,116원을 뺀 나머지 4,857,8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6,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에게 전달하려고한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과실에 의한 방조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 4,857,8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참조). 그러나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관하여 수취인이 이득을 얻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그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0,000원이 이체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②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주범들은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감춘 채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계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보하여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로 원고 및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돈은 이체 직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전액 인출되었거나 지급정지된 이후 피해구제금 명목으로 원고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분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계좌로 이체된 돈에 관하여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 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26. 선고 2013다557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들을 알게 되어 물건 배송업무를 하던 중 '거래처 사장이 돈을 입금하기로 했으니 이를 계좌로 대신 받아 현금으로 출금해서 택배를 전달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직원들의 말에 속아 이 사건 계좌에 이체된 6,000,000원을 출금하려 하였던 것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② 피고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들을 알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게 된 이유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행위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이미 원고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금원을 이체한 후에 그와 같이 편취된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양희, 판사 주채광, 판사 이주현